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24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전종덕·이병진·서왕진

정혜경 • 윤종오 • 문진석

김재원 • 박홍배 • 송재봉

김 윤 · 서미화 · 한창민

전진숙 의원(13인)

제안이유

기후변화 및 불안한 국제정세에 따른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하고 있음.

2023년 농업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에서 18.7%가 증가하여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였고, 농업경영비도 2022년 2,512만 원 에서 2023년 2,678만 원으로 6.6%가 증가하였음.

이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전기·유류(이하 "필수농자재"라 함)에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자재 일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농가경영의 안정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우 필수농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대상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 라. 매년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필수농자재의 가격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 도록 함(안 제9조).
- 바.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위반행위 발생 현황을 조사하고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 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농자재 및 에너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농촌 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축산물 및 임산물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농자재 및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약, 비료, 사료 및 농업용 비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자재
- 나. 농업용 유류 및 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 재 가격의 폭등에 대비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지원 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한 대비 및 대응 계획
 - 3. 필수농자재 품목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4.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필수농자재의 비용 절감을 위한 관한 사항
 - 6. 필수농자재 지원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7. 필수농자재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필수농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연도별 필수농자 재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농업 관련 기 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필수농자재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자경하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위탁경영을 통하여 타인의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1.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농업경영체의 가계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품목의 가격지수를 말한다) 중 재료비, 경비, 및 자산구입비의 가격지수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경우
 - 2.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가 생산하

- 여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 또는 농기자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하여 농가의 채산성(採算性)을 나타내는 지수 를 말한다]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하락한 경우
- 3.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최근 5년간 필수농자재의 평균 가격 대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경우
- 4. 그 밖에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농업인단체의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필수농자재의 지원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 지원금의 사용) 제6조에 따라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1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세

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필수농자재 가격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 재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의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 2. 제7조를 위반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을 요청받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 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2. 제7조를 위반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